

제406회 임시회

'23. 1. 16.(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1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5일

3. 제안사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의 지역 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 조정 (안 제6조제4항)
 - (현행) 100분의 30 → (개정) 100분의 50
- 채권 매입대상 기준 상향 (안 별표 1)
 - (자동차 신규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 <삭제>
 - (자동차 이전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삭제>
 - (각종 계약체결) 총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면제 → 2,000만원 미만 면제
- 공채 매입 면제 대상 추가 (안 별표 2)
 -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에 '배우자'를 추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를 "퍼센트"로 용어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인상 및 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여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제4항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현재 15개 시·도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역개발채권 이율 및 조정범위 현황 : 참고 1

[지역개발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 제19조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금리) 2.5%
- (상환)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안 별표1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충북도와 2천만 원 미만의 각종 계약(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별표1로 개정시 향후 5년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11,333백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 안 별표2는 공채의 매입면제대상에 배우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전 시, 충북도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참고 1

전국 시·도 지역개발채권 이율 및 조정범위 현황

구 분		조 례
지역개발채권 이율 및 조정범위	부산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대구	
	인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가감
	광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충남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전북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전남	
	경북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경남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
	제주	연 1.5% 복리로 지급,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